

옥외광고업자 교육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7년 10월 18일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로과장 배치열)

□ 제안이유

-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옥외광고업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
-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통한 불법광고물 사전근절로 선진 옥외광고문화 창달과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 - 위탁예정 시기 : 2007. 11월중
 - 위탁예정 기관 : 미정(공개모집)

□ 위탁관리 근거

- 법적근거
 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(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)
 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(교육의 위탁)
 -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3조(교육의 위탁)

□ 옥외광고업자 현황

(단위 : 업소)

계	원미구	소사구	오정구
309	186	64	59

□ 위탁관리 방침

- 위탁기간 : 업체선정일(금년 11월 중)로부터 3년
- 위탁비용은 교육대상자의 교육비용으로 대체(조례 제33조6항)
- 교육장소는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에서 제공

□ 위탁방법

-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 적격자 심의 선정

3.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	의	답	변
○옥외 광고업자 최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은?		○2004년 11월에 실시하였으며, 광고물관리법, 시정홍보 등 유한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하였음.	
○광고업자 법에 의무적으로 받아할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며, 교육 불참시 행정조치는?		○광고업자 허가시 신규는 6시간, 보수교육은 3시간으로 불참시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.	
○부천시의 광고물중 신고된 건수와 미신고건수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?		○우리시의 광고물은 101,000개중 신고된 광고물은 46% 미신고된 광고물은 54%입니다,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광고업자 교육을 통하여 시정해 나가고 광고물 제작시 광고물 제작실명제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.	
○광고업자 교육시 비용은?		○광고업자 교육시 위탁교육비 25,000원, 교재료 11,000원을 징수하고 있음.	
○위탁교육 시 장단점은 무엇이고, 시에서 지원 해줄 있는 사항은?		○타시군 28개 시·군도 현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육강사 확보가 용이하고,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하며, 최근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실시로 교육의 질 향상 시킬 수 있음. 시에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경비 절감할 수 있음.	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옥외광고업자 교육 위탁관리 동의안

의안 번호	제166호
의결 년월일	2007. 10. 26 (제139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10. 9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옥외광고업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
-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통한 불법광고물 사전근절로 선진 옥외광고문화 창달과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 - 위탁예정 시기 : 2007. 11월중
 - 위탁예정 기관 : 미정(공개모집)

□ 위탁관리 근거

- 법적근거
 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(광고물등에 관한 교육)
 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(교육의 위탁)
 -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3조(교육의 위탁)
- 현재 옥외광고업자 교육 위탁중인 지자체
 - 경기도 31개 시·군중 부천, 용인, 가평을 제외한 28개 시·군이 위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음

□ 옥외광고업자 현황

(단위 : 업소)

계	원미구	소사구	오정구
309	186	64	59

□ 위탁관리 방침

- 위탁기간 : 업체선정일(금년 11월 중)로부터 3년
- 위탁비용은 교육대상자의 교육비용으로 대체(조례 제33조6항)
- 교육장소는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에서 제공

□ 동의 요구내용

- 부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옥외광고업자 교육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□ 위탁업무 추진계획

- 시의회 동의 → 수탁기관 모집공고 → 수탁기관 선정 → 위탁계약 체결 → 옥외광고업자 교육 실시

□ 위탁방법

-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 적격자 심의 선정